

# 송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

학칙제정	2009.03.01.
학칙개정	2010.03.03.
학칙개정	2012.04.02.
학칙개정	2015.03.01.
학칙개정	2023.02.16.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유치원 규칙(이하 '학칙' 이라 한다)은 본원에서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명칭)

본원은 송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.

### 제 3 조 (위치)

본원은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433-25에 위치한다.

## 제 2 장 교육연한 · 학기 및 휴업일

### 제 4 조 (교육연한)

본원은 교육연한을 1년으로 한다. 단,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원장이 수료한 원아에게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.

### 제 5 조 (학기)

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 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.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

유치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# **제 6 조 (휴업일 등)**

- ①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,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

### **제 3 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**

#### **제 7 조 (학급편제)**

본원의 학급 수는 일반학급 1학급, 특수학급 1학급으로 하되, 특수학급은 시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배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#### **제 8 조 (원아정원)**

본원의 원아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유치원 원아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따른다.

## 제 4 장 교육내용

### 제 9 조 (교육내용)

- ① 본원의 교육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, 교육감이 제시한 ‘경기도유치원교육과정편성·운영지침’ 및 경기도시흥교육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유치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.
- ② 유치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

### 제 10 조 (수업일수)

반일제의 수업일수는 주 5일제로 하며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.

### 제 11 조 (수업운영 방법)

- ① 수업 운영 방법은 반일제(4시간)로 한다.
- ②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유치원과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급을 달리하는 원아를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
- ③ 유치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유치원의 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, 이 때 유치원장은 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

## 제 6 장 입학 · 재입학 · 편입학 · 전학 · 휴학 · 퇴학 · 수료 및 졸업

### 제 12 조 (입학자격 및 방법)

-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일반학급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

의 유아로 한다.

### 제 13 조 (재입학.편입학.전학.휴학)

- ① 재입학 · 편입학 · 전학 · 휴학의 시기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- ② 본원에 전학하려는 자는 재학한 유치원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본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기록부를 송부한다.

### 제 14 조 (퇴학)

원아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일정하지 않은 자
-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### 제 15 조 (수료 및 졸업)

- ① 유치원의 장은 원아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한다.
-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## 제 7 장 수업료 ·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

### 제 16 조 (수업료.입학금)

본원의 원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교육부령 및 경기도학교수업료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.

### 제 17 조 (그 밖의 비용징수)

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징수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· 징수한다.

## 제 8 장 교직원 관리규정

### 제 18 조 (연수.연찬)

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재 연구, 수업 연구, 교직원 연수 등은 유치원 교육계획에 의한다.

### 제 19 조 (교직원 상벌)

교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원내 교직원 상벌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 20 조 (근무규정)

- ① 교직원의 근무 시간은 08:40 ~ 16:4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방과후 과정 운영에 따른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교직원의 복장은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,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③ 기타 사항은 유치원 교육 계획,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## 제 9 장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

### 제 21 조 (유치원규칙개정절차)

- ① 규칙은 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규칙을 개정한다.
- ② 제 1항의 규칙 개정은 학교(유치원)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(유치원)운영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③ 제안된 규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유치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22 조 (시행규칙)

기타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